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-2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명확화 (안 제13조의2)
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상 조직변경인가(제105의2)로 설립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여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,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

나.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(안 제14조의2)

- 자동계좌이체 납부시에만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전자송달 의한 납부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시에도 적용되도록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8. 2. 8. ~ 2. 28. (제출의견 없음)
- 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 (2018.3.29.)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중 “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”를 “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 및 제105조의2”로, “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”을 “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의 제목 “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”를 “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자동계좌이체”를 “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”로, “경우 :”를 “경우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”를 “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”로, “경우 :”를 “경우: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.</p> <p>제14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특별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50원</p> <p>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3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 및 제105조의2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--.</p> <p>제14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-- 경우: -----</p> <p>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- ----- - 경우: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